환경부

환경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추석연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알림

1. '17.10.2. 임시공휴일 지정('17.9.5.)으로 금년 추석연휴기간이 최장 10일로 길어짐에 따라, 연휴기간 동안 휴진, 휴무하는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의 의료폐기물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이에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연휴기간(9.30~10.9) 내 보관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10.15(일)까지 연장하오니,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업자는 상기 기한 내 의료폐기물이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상기 기한 내 수거가 어려운 배출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관할기관에 처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료폐기물은 인체감염 우려 등으로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보관기간이 짧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연휴 전, 연휴 중 병원 진료일에 의료폐기물이 신속?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은 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이 30일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는 보관기간 연장 외에 보관창고 소독의무 등 그 외 의료폐기물 보관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기관에서는 보관기간 연장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원순환과장),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대구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변화대응과장),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울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보전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새만금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청결과장),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한국의료폐기물수집운반협회장,대한의사협회장,대한병원협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장,대한수의사회장,대한한의사협회장

주무관 김순미 사무관승진예정자 하미경 과장 전결 09/22 홍정섭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5511 (2017.09.22.) 접수 RFID운영팀-1652 (2017.09.25.)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 http://www.me.go.kr

전화 044-201-7362 /전송 044-201-7376 / sunenvi@me.go.kr / 공개